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제1625호 2021. 10. 05.(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3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_____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_____ 39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5로 61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10.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3-15	인천광역시 서구 도당5로 61 (오류동)	20121025	도당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282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신로 28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신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신로라 명명함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4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2, 395-9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35-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규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16 (규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메이치와이 냉동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0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2-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길 9 (오류동)	20090922	오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5-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18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5-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3 (마전동)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9-1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5 (당하동)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9-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3 (당하동)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797-9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83번길 19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우원개발(주) 현장사무실 건설현장사무실
1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8-10, 218-8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89-8 (백석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공 봉수대가 있었음	
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7-8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50 (마전동)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식연하이빌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길 43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규곡동 255-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2번안길 70-16 (규곡동)	20090710	봉수대로1532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45 (원당동)	20081231	으들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10-5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사곶로21번길 2 (경서동)	건물말소	20090922	사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번길 7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번길 9 (석남동)	건물 말소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1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73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7호(2011. 8. 16.)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49호(2017. 1. 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35호(2017. 3. 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53,855	-	53,855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855	-	53,85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55	-	53,855	100.0	

2) 용도지구(해당사항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22	12 (12~23)	국지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도로		1977.3.31 (인고제73호)	
기정	중로	2	773	15	국지도로	197	중3-122	소3-101	일반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297	12	국지도로	76	중3-121	소2-3	일반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50	중2-773	중3-297	일반도로		2011.8.16. (인고제207호)	
기정	중로	3	121	12 (12~21)	집산도로	810	대2-35	중3-122	일반도로		1996.8.6. (인고제139호)	
기정	소로	3	17	6 (6~9)	국지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10~15)	국지도로	181	중3-122	소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17	소1-3	소3-17	일반도로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구 가좌동 344번지	423	-	423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⑫	한신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44번지	6,136	-	6,136	1981.9.24. (건고제539호)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①	-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96번지	2,029	-	2,029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4)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80, 399번지	1,126	-	1,126	2011.8.16. (인고제207호)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05-5번지	79,439	-	79,439		지구외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1	-	-	41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3,855	획지44-1 (공동주택)	35,564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6.49% 이하	274.99% 이하	300% 이하	85m이하
			획지44-2 (노유자시설)	1,300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기정 변경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 관련 시설	5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3층이하)	
			획지45-2 (주차장)	423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44-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4-2	지정용도	기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5-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내 용		계 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44-1	· 인접대지경계선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용적률완화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6.2% + 공공이용 시설부지 확보 3.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89.9%이하 → 계획용적률 : 274.99%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 44-4, 44-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3, 45-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지형변동 절성도균형	○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미 ○ 절·성토의 공사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함 ○ 주변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으로 최대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유도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율 증가 예상 ○ 녹지대 연결 필요	○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율 증가 ○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비오름	○ 비오름유형 변화 없음 ○ 비오름 공간증가 예상	○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름 유형은 공동주택지(평가등급 5등급)로 평가제외지역이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름 유형은 분포하지 않음 ○ 녹지면적 확보로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생활환경	일조	○ 본 건축물에 의한 일조의 영향	○ 확실적인 평행배치를 피하고 변화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도
	바람	○ 바람길의 확보	○ 판상형의 거대건물이 아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
	에너지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 환경친화적 건전한 공간 조성	○ 산책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Green Network체계 구축 ○ 보행연결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행 Network체계 구축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폐기물의 발생, 공사장 소음발생 등 예상	○ 폐기물관리법,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재 난 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전·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불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점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사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북측 가정여중교 주변, 남측 유영아파트 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인접한 가정여중 측 획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일조 및 경관상 여건 향상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아.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	44-1	44	40,019	1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35,56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노유자시설(보육시설)
	44-2			2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1,300		
	44-3			3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2,029	어린이공원	
	44-4			4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641	완충녹지	
	44-5			5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485	완충녹지	
	45-1	45	6,783	1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6,136	어린이공원	
	45-2			2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423	노외주차장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규모	비고	
도로	7,277㎡	8개노선	
주차장	423㎡	1개소	
공원	8,165㎡	2개소	건립세대수×3㎡ 이상 또는 부지면적 5% 이상 중 큰 면적
녹지	1,126㎡	1개소	
상하수도	세대당 0.5ton 이상(609ton) 급수시설 설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 수도법 및 하수법에 적법하게 설치계획	
소방용수시설	29ton 이상 설치	화재안전기준(제4조)에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비상대피시설	피난안전구역 및 세대내 대피공간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 및 건축법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가스공급시설	적법하게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관계법령 준용하여 적법하게 가스공급시설 계획	

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현황 세대수			계획 세대수			비고
	계	가옥주	세입자	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재건축 소형주택	
세대수	702	278	424	1,218	1,180	38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개발방식	면적	진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가좌주공 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75,024.7㎡	21.99%	250%	90m 이하	1,757 세대	사업시행인 가	
가좌진주 1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21,488.5㎡	18%	250%	113m 이하	727 세대	조합설립인 가	

파.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이주시기 및 철거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목활용 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80년대 중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연립주택지)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 건축물은 3층 이하의 연립 및 빌라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등 약 총 693주가 분포함 ○ 기타 수목으로는 장미넝쿨, 수수꽃다리, 쥐똥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율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한신공원내 위치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추후 새로이 신설되는 어린이 공원에 최대한 이식 보존할 계획임

더.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러.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특보 발효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체적 임무와 단장 및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안 제2조 ~ 제7조)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과 관련하여 비상 소집 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0조)
- 다.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 제18조)
-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704, 팩스 032-560-273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특보 발효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등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체적 임무와 단장 및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안 제2조 ~ 제7조)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과 관련하여 비상 소집 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0조)
- 다.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 제18조)
-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붙임 참조
- 나. 관계 법령 발췌 : 붙임 참조
- 다. 예산 조치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비상 연락망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잃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 방재협의회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 안전 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1. 안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2. 그 밖의 재난 안전 관련 활동 또는 훈련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

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서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 무수당 단가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정한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단, 자연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 발생 경위서, 사고 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
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p>[첨부서류]</p> <p>(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p>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별지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8조제3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제1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제14조 관련)

출 입 증	사 진 (3×4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사 진 (3×4cm)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회장) 삽입	7.7 c m
← 5.5cm →			↓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a/m²(재활용품)]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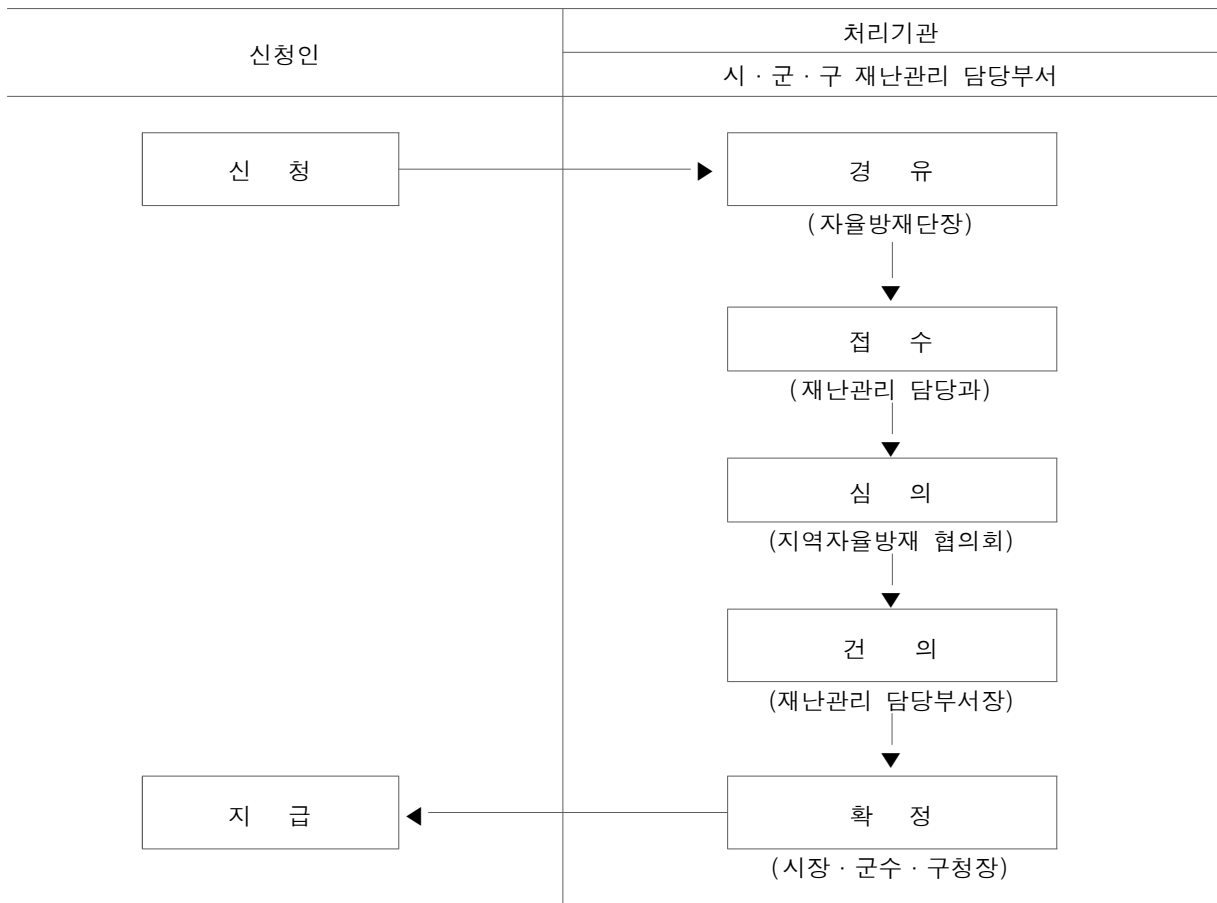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관계법령 발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시기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5조)
-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임기 기간과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 라.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704, 팩스 032-560-273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시기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5조)
-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임기 기간과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 라.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험도 평가단”이란”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도 평가단원”이란”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으로, “지진관련”을 “관련”으
로 한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으로,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제5조제4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한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를 “한정한

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시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으로, “참가한”을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으로 한다.

3.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서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서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으로,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사용 시 유의”, “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6항 관련)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사 진</div>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하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560-09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서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p>	<p>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 ----- -----.</p>
<p>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p>	<p>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p>

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신설>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관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 3. (생략)

<신설>

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 관련 -----

--.

제3조(적용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 2. ----- 한정
----- 한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
- 3.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

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서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서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

----- . -----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
-----.

<신설>

제5조의2(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서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② (생략)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으로, “2단계 위험

도 평가” 결과는 “위험”, “사용 시
유의”, “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
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
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
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
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
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
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생 략)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
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
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 없으면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

----- 필요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